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2

발의연월일: 2024. 6. 14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구자근 • 권영세

강승규・조지연・김장겸

임이자 · 김예지 · 이종배

김위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6·25전쟁에 참전한 소년·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단체에 '6·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'를 추가함(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87호)의 의결을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"를 "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, 6·25참 전소년소녀병전우회"로 한다.

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6·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회원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설립준비) ① 이 법에 따라 6·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제3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원을 대표하는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- 1. 설립취지
- 2. 설립위원의 성명 및 주소
- 3. 사무소의 주소지
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③ 6·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정관 제정 및 최초의 임원선출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에서 행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상	제1조(목적)		
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			
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			
회, 광복회, 4ㆍ19민주혁명회, 4			
・19혁명희생자유족회, 4・19혁			
명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			
<u>지회</u>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	동지회, 6·25참전소년소녀병전		
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	<u> 우회</u>		
그 유족이 상부상조(相扶相助)			
하여 자활(自活) 능력을 기르고			
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			
지(遺志)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			
양(宣揚)하고 국민의 애국정신			
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			
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			
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			
목적으로 한다.	.		
제3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3조(회원)		
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			
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0. 6 · 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		
	의 회원: 「국가유공자 등 예		

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

 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

 사람